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93
----------	------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의자 : 안규백 · 전현희 · 최인호
박홍근 · 민홍철 · 윤관석
정성호 · 이춘석 · 이원욱
안호영 · 박찬우 · 윤호중
백재현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철도건설법」에는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운영기관별로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로인해 우리나라는 철도교량, 터널, 신호, 전기설비와 같은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만약 철도시설이 손상되거나 붕괴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체계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목적 규정을 수정함(안 제1조).
- 나.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다. 철도시설관리자는 기본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3년마다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6조).
- 라.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
- 마.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관리 중기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33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안 제38조).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 관리자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10.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

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긴급점검”이란 철도시설의 붕괴·전도·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란 철도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철도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건설”을 “건설과 철도시설의 관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철도의 건설기준)”을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사업은”을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으로, “기준에 맞게 시행하여야”를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

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다음의 “제4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하고, 제26조 다음의 “제5장 벌칙”을 “제7장 벌칙”으로 하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하고,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하며, 제4장(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5장(제38조 및 제39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연차별 투자계획 및 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성능,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시·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 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 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기본계획 및 해당 시·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3년 단위의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중기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중기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1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연차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중기시행계획 및 연차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2. 제1호 외의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중기시행계획 및 연차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도 유지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중기시행계획 및 연차시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등 중기시행계획 및 연차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43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중기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

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점검항목·점검기준 등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기·방법·절차 등의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협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도지사가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긴급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긴급안전조치)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29조에 따른 정밀진단,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을 통해 소관 철도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등 철도시설이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철도시설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거나 제30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

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등의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중기시행계획 및 연차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이하 “정기점검등”이라 한다)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등 또는 제32조에 따른 성능평과를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등록한 철도안전전문기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4. 그 밖에 정기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철도시설관리자가 인정한 기관

제36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년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역사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역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 편의수준에 대한 조사·평가·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역사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查)를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 평가의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이하 “철도기술”이라 한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제38조에 따라 철도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종전의 제26조) 중 “제25조에”를 “제41조에”로 한다.

제6장에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

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기시행계획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연차시행계획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4.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5. 제29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6.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7. 제31조에 따른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협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45조(종전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4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종전의 제28조) 본문 중 “제27조”를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종전의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라 중기시행계획 또는 연차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중기시행계획 또는 연차시행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43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철도건설법</u>	<u>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u>
<p><u>제1조(목적)</u>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 7.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1조(목적)</u>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p>

<신 설>

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10.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긴급점검”이란 철도시설의 붕괴·전도·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란 철도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철도시설

<신 설>

<신 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 건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철도의 건설기준) 철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건
설과 철도시설의 관리-----

-----.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

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연차별 투자계획 및 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4. 철도시설의 성능,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 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

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기본계획 및 해당 시·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3년 단위의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중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중기시행 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1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연차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중기시행 계획 및 연차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2. 제1호 외의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중기시행계획 및 연차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도 유지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중기시행계획 및 연차시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등 중기시행계획 및 연차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43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중기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점검항목·점검기준 등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기·방법·절차 등의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철도

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협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도지사가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긴급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긴급안전조치)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29조에 따른 정밀진단,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을 통해 소관 철도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중대한 결함

<신 설>

을 발견하는 등 철도시설이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철도시설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거나 제30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
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
가의 실시 방법·절차 등의 성
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중기시행계
획 및 연차시행계획에 따라 소
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
관리자가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6
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정밀
진단, 긴급점검(이하 “정기점검
등”이라 한다)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
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
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

간을 정하여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5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등 또는 제3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등록한 철도안전전문기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4. 그 밖에 정기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철도시설관리자가 인정한 기관

<신 설>

제36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년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역사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역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역사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실지 조사(實地調查)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 평가의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의 육성

제38조(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이하 “철도기술”이라 한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

<신 설>

<신 설>

<신 설>

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필
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기술 연
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
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
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기술 연구·개발 사업
으로 개발된 기술의 이용·보급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
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
관 또는 단체에 재정적·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
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
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게 제38조에 따라 철도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

<신 설>

	<u>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u>제4장 보칙</u>	<u>제6장 보칙</u>
<u>제24조(보고·검사 등) (생 략)</u>	<u>제40조(보고·검사 등) (현행 제24조와 같음)</u>
<u>제25조(감독) (생 략)</u>	<u>제41조(감독) (현행 제25조와 같음)</u>
<u>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	<u>제42조(청문) -----</u>
<u><신 설></u>	<u>제43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1.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기시행계획</u>
	<u>2. 제26조제2항에 따른 연차시행계획</u>
	<u>3.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u>

4.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5. 제29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6.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7. 제31조에 따른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철도시설 관리자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
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
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
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와 협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
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별칙

제27조(별 칙) 제25조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7장 별 칙

제45조(별 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

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 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
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
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
니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
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
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

	<p><u>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p> <p><u>4.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 료를 제출한 자</u></p> <p><u>④ 제4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u></p>
<u>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46조(양벌규정) ----- ----- ----- --제45조제4항----- ----- ----- -----. ----- ----- ----- ----- ----- ----- -----.</u>
<u>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 | | |
|--|--|
| <p><u>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u></p> <p><u>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p> <p><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p> | <p><u>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u></p> <p><u>2.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u></p> <p><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u> <u>2.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u> <u>3.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u> <u>4.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u> <u>5.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p><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라 중기시행계획 또는 연차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중기시행계획 또는 연차</u> |
|--|--|

시행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43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